

이사가 2인 이하라면?

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다만, 소규모회사(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)의 경우 이사의 수를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(상법 제 383조 제 1항).

하지만 이사회는 3인 이상인 경우만 구성될 수 있기 때문에 **이사가 2인 이하의 소규모 회사**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. 상법에서는 특정 사항들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, 이 경우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을까요?

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은 누가 되나요?

원칙적으로 소규모 회사의 경우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(상법 제 383조 제 6항).

그러면 대표이사를 정하고 싶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?

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며, ‘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선정할 것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(상법 제 389조 제 1항). 하지만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.

따라서 정관에 “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정한다”는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더라도 이러한 정관규정에 의해서는 대표이사를 정할 수 없습니다. 그렇지만 정관에 “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”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(법인등기선례 제 201709-2호).

즉, 대표이사를 정하고 싶다면 정관에 “대표이사는 이사들의 합의로 정한다”는 규정을 두고 이사들의 합의로 대표이사를 정할 수 있습니다.

회사를 대표하는 사람(이사 혹은 대표이사)이 정해진 후에는 이사회 대신 무엇을 할 수 있나요?

위와 같이 대표이사가 정해지거나 정하지 않아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되는 경우, 그 대표하는 사람은 이사회 대신 여러가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(상법 제 383조 제 6항). 소규모 회사의 특례인 것입니다.

소규모 회사에서 이사(혹은 대표이사)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(1) 자기주식의 소각(상법 제 343조 제 1항 단서)
- (2) 전환주식의 전환통지(상법 제 346조 제 3항)
- (3) 주주총회의 소집결정(상법 제 362조, 제 366조 제 1항, 제 412조의 3 제 1항)
- (4)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허용(상법 제 386조의 4 제 1항)

- (5)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, 대규모 재산의 차입,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, 지점의 설치·이전 또는 폐지 등 업무집행(상법 제 393 조 제 1 항)

위와 같은 사항들을 결정하고 싶은 경우,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는 소규모 회사는 이사(혹은 대표이사)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.

회사를 대표하는 사람(이사 혹은 대표이사)은 이사회 대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요?

소규모 회사라 하더라도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 혹은 대표이사가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 상법은 이사회의 결정사항 중 중요한 것들은 ‘주주총회’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. 통상적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사항 중 소규모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대신하도록 정해진 것들은 아래와 같습니다.

- (1) 주식양도승인(상법 제 355 조)
- (2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(상법 제 340 조의 3 제 1 항 제 5 호)
- (3) 경업금지 승인(상법 제 397 조 제 1 항 및 제 2 항)
- (4)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승인(상법 제 397 조의 2 제 1 항)
- (5)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승인(상법 제 398 조)
- (6) 신주발행사항 결정(상법 제 416 조)
- (7)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(상법 제 451 조 제 2 항)
- (8)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(상법 제 461 조 제 1 항 본문 및 제 3 항)
- (9) 중간배당(상법 제 462 조의 3 제 1 항)
- (10) 사채의 발행(상법 제 469 조)
- (11) 전환사채/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사항 결정(상법 제 513 조 제 2 항, 제 516 조의 2 제 2 항)

위와 같은 사항들의 경우 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주주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.

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, 법무법인 세움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. Copyright ©2022 SEUM Law.